

## ▶면에서 이어짐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송재룡 원장은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장학금이 노동의 대가임을)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을 지원할 제도적 방안에 대해 김민섭 씨는 “대학원생을 후속연구자로 볼 것이 아니라 단독연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이 단독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할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학문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가 설립하기로 결정한 학내 인권센터에 관해선 “대부분의 대학 인권센터가 신고가 들어오면 징계를 권고하는 수준의 권한을 갖는데 그 치고 있다”며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인권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대학원 서정호 회장은 동국대의 사례를 들어 “제도변화에 앞서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권센터는 무의미할

것”이라 말했다. 서정호 회장은 먼저 “동국대에선 도제식 교육이 당연한 분위기”라고 운을 뗐다.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같은 답변을 피도록 지시하거나 점심시간마다 샌드위치를 배달하게 한 사례를 말하며 그는 “도제식 교육이 만든 수직적 관계 탓인지 인권침해가 가벼운 일로 인식되며, 동국대에선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서정호 회장이 “교수 원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징계 이후에도 쉬어 학교로 돌아오는 ‘불사조 교수’에 대한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철 교수와 공과대학 최진철 교수, 김중섭 경상대 교수 등 교수패널들은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한 법적 혹은 사회적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패널들은 이후,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연구비갈취, 행정조교 인건비 액수의 적합성, 대학원 선후배 간 폭언·폭력 사례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곤 토론을 마쳤다.

## 교수 싸움에 학생 졸업 등터진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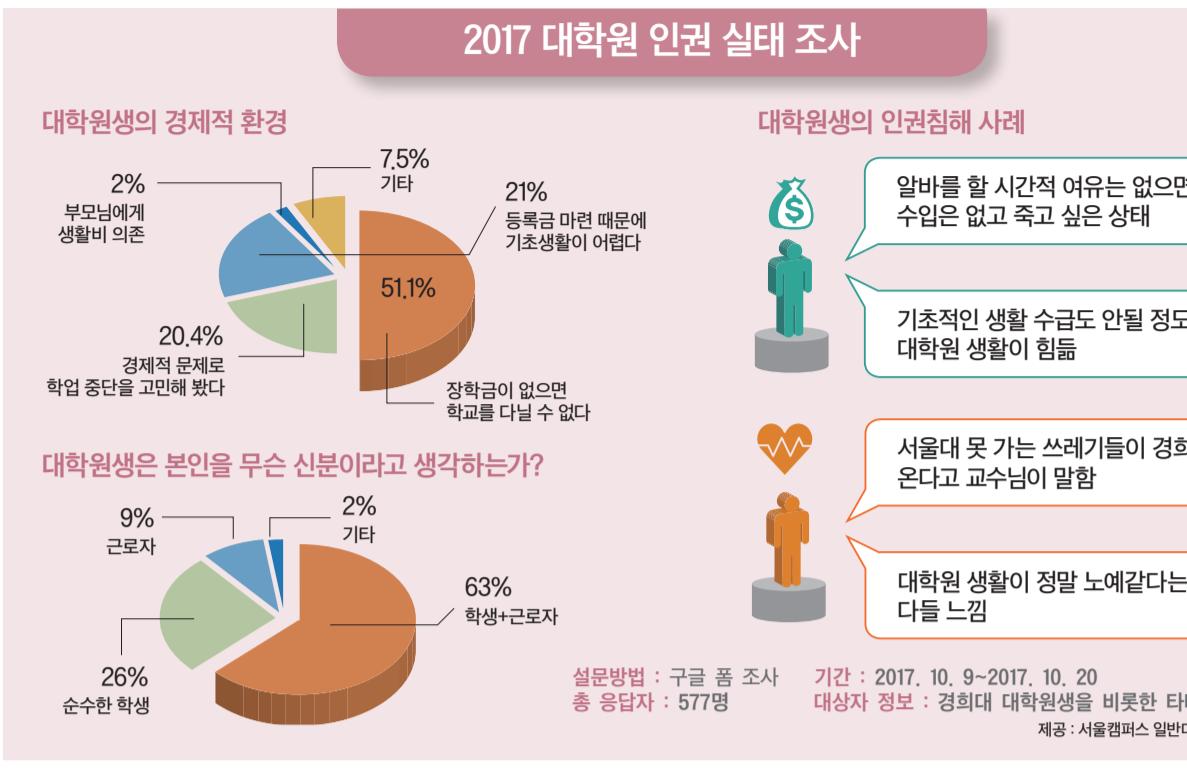
【서울】 지난 2일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과 A학생이 학과 교수 교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의 불화로 비롯된 교수회의의 비상식적 결정 탓에 교육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논문공개발표회가 지도교수 별로 나눠 진행하게 된데서 비롯됐다. 논문공개발표회는 작성증인 논문에 대해 교수들에게 공개적인 피드백을 받는 자리며 졸업요건인 논문심사를 받기 위한 필수절차다. 논문공개발표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는 일반대학원 전체에 정해져 있고, 3인 이상의 교수가 참석해야 열린다. 아동가족학과 외 타 학과들은 이 논문공개발표회를 학생 구분 없이 일시에 진행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아동가족학과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논문공개발표회가 지도교수 별로 진행돼 학생들이 교수 3명을 직접 ‘모시러’ 다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각 교수들이 이를 학생의 논문공개발표회에 참석하기 빈번하게 거부해 매개기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교수 간 불화가 심해, 몇몇 교수들

이 사이가 나쁜 교수를 지도교수로 두 학생들의 논문공개발표회 참석을 고의로 거부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학과 규정이 바뀐 이후 논문공개발표회 성사여부가 불안해, 논문 쓰는 데 지장이 크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논문 공개발표회 관련 규정이 달라진 배경은 교육목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학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규변경의 이유는 “한 교수의 자극적인 연구 피드백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를 받아서”였다.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아동가족학과 내규를 복구시켜달라’라는 이 학생들의 요청에 “(원장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답했다. 송재룡 원장은 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과 밖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교수회의가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는 근거로 앞으로 학과에서 진행될 교수회의 의결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생활과학대학 오윤자 학장은 이들에게 “교수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A학생은 “여타 대학원처럼 업무상의 부조리도 존재하지만, 비민주적인 학과 운영 방식 탓에 졸업이 불안한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인권센터, 실질적 권한 가져야”  
의식·권한·구성 등 고민필요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10월 27일 열린 ‘학생과 교수 함께하는 열린 인권 토론회’에서는 물 밑에 있던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가 수면으로 올라왔다. 인권침해의 문제는 대학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생에게도, 직원에게도, 심지어는 교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수업 중 교수에게 막말을 들어야 하는 학생, 교수의 폭언을 견뎌야 하는 직원, 교수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교수 문제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 우리학교는 2017 입금 및 단체협약의 결과로 2018년 1학기까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인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인권센터가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모습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가장 선언되어야 할 것은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민철(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식과 제도는 필요로 가야 한다”라며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모두가 인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인권센터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교육의 제도화’이다. 러시아인 김민섭 씨는 “매 학기 모든 구성원에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한다”며 “사건이 발

생했을 때를 위한 매뉴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공론화하기 위해 출범한 대책위원회의 유현미 회장은 구성원별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유 씨는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지만, 정교수에게는 이수 의무가 없어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찾아가는 교육, 대상에 맞춘 교육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유현미 씨는 “성희롱 사건에서 인권센터의 권한은 조사와 권고 수준이었다”며 “권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에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 씨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리조치를 소극적으로 한 경우,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사안이 심각해질 경우 피해자를 법적으로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학원장 송재룡(사회학과) 교수는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

스텝까지 구축해야 한다”며 인권센터의 역할이 학교 내부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이 내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서정호 회장은 인권센터라는 제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피해자 대신 인권센터에 제3자 고발을 시도했지만 인권센터는 당사자 증언을 요구했다”며 “인권센터 구성원이 모두 내부 사람이라 학내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특정 방향에 유리하도록 판단이 흐르거나 사실이 왜곡되지 못하도록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윤단비(무용학) 회장은 “대학원을 넘어 학부와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인권센터에 대해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기대한다”며 “법적인 절차는 전문위원이 진행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상황을 유연하게 해쳐나갈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대학생 중, 금학기 면제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대학영어”
-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구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원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공인영어시험능력으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국제화증인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영어권 국제 외국인 특별입학자
- Intensive Program DEEP, LEAP, REACH 이수자
-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4.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 종류	계열	대학	면제 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공인영어시험능력자	국외어개방 시험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6(Level2) 이상
	자연과학 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교,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7(Level2) 이상
	국제화 계열	국제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6(Level2) 이상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7(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 종류	자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권)	영어권 국제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면제 종류	자격	면제내용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처가 인정하는	과목면제
	- 재학 중 영어권 학교자녀/외국인 및 외국인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 (신청 기간에 제출)

※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학점교양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학점교양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학점교양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3전공이나 다른 타 전공의 외국어, 2년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학교과목]

제1단계	제2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평가 80점 이상에

·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을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합니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독후감 평가 (관상도서 총 3권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학점이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